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장학규정

제정	2001. 8. 1.	제335호
개정	2002. 4. 3.	제367호
	2002. 7. 6.	제382호
	2004. 9.21.	제436호
	2010. 3. 5.	제522호
	2014. 7.31.	제653호
	2015. 2. 3.	제660호
	2021. 9.13.	제861호
	2024. 2.22.	제9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제2조(적용범위)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① 본교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1. 성적우수 장학금
2. 외국인전형자 장학금 <개정 2014.07.31>
3. 봉사장학생 장학금 <개정 2014.07.31>
4. 특별장학금
5. 경제적가사곤란자 장학금 <개정 2015.02.03>
6. 현직교원 장학금 <신설 2014.07.31>

② 교외 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 대상자를 지명하거나 선정 의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교내 장학생의 선정 기준) ① 교내 장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주임교수가 추천하며 수혜기간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07.31>

② 장학생 선정자격 기준 및 장학금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외 장학생의 선정) ① 교외 장학기관에서 해당 인원과 조건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교외 장학기관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제6조(신청 및 절차) 교내 장학금의 수혜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아래 각 호 중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장학생 추천서 <개정 2014.07.31>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전형자 장학금 신청자) <개정 2014.07.31>

제7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생은 당해 학기에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생(신입학생은 입학금만 장학금 대상이 됨)
2. 근신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칙 등을 위반한 자

제8조(수혜기간의 제한)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특수대학원 5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1.9.13., 2024.2.22.>

제9조(지급시기) ①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때 학기 초로 한다.

- ② 교외 장학금의 지급은 교외 장학기관이 정하는 시기로 한다.

제10조(지급방법) ① 교내 장학금 중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 방법은 해당 금액의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02.03>

- ② 교외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
2. 장학금 신청 절차 또는 신청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제12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335호, 2001. 8.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7호, 2002. 4.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6조는 2002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2호, 2002. 7. 6.)

이 규정은 200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6호, 2004. 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2호, 2010. 3.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53호, 2014. 7.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0호, 2015.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61호, 2021. 9.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1호, 2024.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5.2.3.>

교내 장학생의 선정 기준 및 장학금 내역

장학종별	수혜 자격 기준	장학금 내역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자 30%이내인 자[논문학기 원생 중 직전학기(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평균평점이 3.8이상인자의 수업료를 면제한 후 재학생 면제]	재학생 : 수업료 10% 감면 신입생 : 입학금 면제
외국인전형자 장학금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8이상인 자	수업료 45% 감면
봉사장학생 장학금	대학원에서 학사 또는 수업실험 등의 업무 보조 원생	별도 계획에 의함
특별장학금	대학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할 자(선발시기는 입학학기 다음 학기인 2학기에 선발하고, 특별장학금 지급 계속 여부는 직전 학기 평균평점 3.8이상인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수업료 면제
현직교원 장학금	교육대학원 원생 중 현직교원	수업료 15% 감면